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112

#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566호 2004. 6. 25.(금)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 치 법 규

[규 칙]

제3398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	4
제3399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	6
제3400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46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정정보 → 시정뉴스 → 서울시보 클릭>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5일, 10일, 15일 .....5일주기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2부)하며, 전자문서나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mailto: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평 일 14:00  
 토요일 11: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훈 령]

제934호 서울특별시정원의상근인력관리규정중개정규정 ..... 47

[입 법 예 고]

제2004-696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47

◎ 고 시

제2004-198호 서울당산동임대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49

제2004-2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작성 ..... 50

제2004-20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 61

제2004-20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 61

제2004-203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 62

제2004-204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주택재개발사업및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 63

제2004-207호 노외주차장설치및사용개시 ..... 64

제2004-208호 2004년벼병해충방제계획 ..... 64

◎ 공 고

제2004-690호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 ..... 66

제2004-691호 전력시설물의설계업(감리업)등록 ..... 66

제2004-698호 지적측량업의등록(신규) ..... 66

제2004-700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 67

제2004-701호 문화재수리업자등록 ..... 67

◎ 구 고 시

제2004-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중구) ..... 68

제2004-5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학교, 수도)지형도면작성(용산구) ..... 69

제2004-7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성북구) ..... 69

제2004-75호 보문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지형도면(성북구) ..... 70

제2004-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인가(강북구) ..... 75

제2004-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강북구) ..... 77

제2004-44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녹지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도봉구) ..... 79

제2004-46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조성)실시계획인가(노원구) ..... 80

제2004-48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노원구) ..... 81

제2004-58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인가(은평구) ..... 82

제2004-5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및지형도면(서대문구) ..... 84

제2004-39호 대경연합연립재건축(1단지)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구) ..... 84

제2004-40호 대경연합연립재건축(2단지)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구) ..... 85

제2004-41호 대경연합연립재건축(3단지)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구) ..... 85

제2004-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실시계획변경인가(강서구) .....	86
제2004-58호 김포가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서울도시가스특별계획구역(문화시설)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변경지형도면승인(강서구) .....	86
제2004-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구) .....	88
제2000-4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형도면작성(관악구) .....	88
제2004-49호 도시계획시설(신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관악구) .....	89
제2004-50호 봉천제7-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관악구) .....	90
제2004-31호 서초동꽃마을연립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서초구) .....	90
제2004-45호 하천점용허가(서초구) .....	90
제2004-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남구) .....	91
제2004-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지형도면정정승인(강동구) .....	91

### ◎ 구 공 고

제2004-316호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지정(성동구) .....	93
제2004-3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도봉구) .....	93
제2004-2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독립근린공원내이진아기념도서관신축)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서대문구) .....	99
제2004-2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도로, 광장)시행자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 (서초구) .....	99
제2004-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위한열람(서초구) .....	102

### ◎ 사업소고시

제2004-112, 113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	103
---	-----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398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총계란중 본청 “3,055”를 “3,066”으로, 사업소 “6,710”을 “6,699”로 하고, 일반직 계란중 총계 “6,152”를 “6,160”으로, 본청 “2,249”를 “2,270”으로, 사업소 “3,490”을 “3,477”로 하며, 일반직 5급 소계란중 총계 “797”을 “792”로, 본청 “409”를 “406”으로, 사업소 “321”을 “319”로 하고, 일반직 5급 행정란중 총계 “327”을 “325”로, 사업소 “51”을 “49”로 하며, 일반직 5급 의무란중 총계 “63”을 “58”로, 본청 “9”를 “4”로 하고, 일반직 5급 행정또는기계란 다음에 행정또는전기란을 신설하여 총계 및 본청을 각각 “1”로 하며, 일반직 5급 행정또는토목란중 총계 “3”을 “4”로, 본청 “2”를 “3”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소계란중 총계 “1,953”을 “1,959”로, 본청 “889”를 “900”으로, 사업소 “941”을 “936”으로 하고, 일반직 6급 행정란중 총계 “727”을 “730”으로, 본청 “516”을 “524”로, 사업소 “144”를 “139”로 하며, 일반직 6급 전산란중 총계 “48”을 “49”로, 본청 “31”을 “32”로 하고, 일반직 6급 전기란중 총계 “66”을 “67”로, 본청 “18”을 “19”로 하며, 일반직 6급 통신기술란중 총계 “13”을 “14”로, 본청 “6”을 “7”로 하고, 일반직 6급 통신기술란 다음에 행정또는전기란을 신설하여 총계 및 본청을 각각 “1”로 하며,

일반직 6급 행정·전기또는별정(6급상당)란중 총계 “2”를 “1”로 하고, 본청 “1”을 삭제하며, 일반직 7급 소계란중 총계 “2,109”를 “2,115”로, 본청 “733”을 “744”로, 사업소 “1,246”을 “1,241”로 하고, 일반직 7급 행정란중 총계 “642”를 “645”로, 본청 “386”을 “393”으로, 사업소 “194”를 “190”으로 하며, 일반직 7급 사회복지란중 본청 “4”를 “5”로, 사업소 “14”를 “13”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전기란중 총계 “92”를 “93”으로, 본청 “7”을 “8”로 하며, 일반직 7급 행정또는전기란중 총계 및 본청 “1”을 각각 “2”로 하고, 일반직 7급 행정또는건축란 다음에 행정또는통신기술란을 신설하여 총계 및 본청을 각각 “1”로 하며, 일반직 8급 소계란중 총계 “807”을 “808”로, 본청 “84”를 “86”으로, 사업소 “663”을 “662”로 하고, 일반직 8급 행정란중 총계 “138”을 “140”으로, 본청 “34”를 “37”로, 사업소 “77”을 “76”으로 하며, 일반직 8급 행정또는전기란중 총계 및 본청 “5”를 각각 “4”로 하고, 일반직 9급 행정란중 총계 “47”을 “46”으로, 사업소 “32”를 “31”로 하며, 일반직 9급 의류기술란중 총계 및 사업소 “10”을 각각 “11”로 하고, 별정직 계란중 총계 “136”을 “135”로, 본청 “51”을 “50”으로 하며, 별정직 6급상당 소계란중 본청 “22”를 “21”로, 사업소 “20”을 “21”로 하고, 별정직 6급상당 시사편찬전문요원란중 본청 “1”을 삭제하고, 사업소 “1”을 신설하며, 별정직 7급상당 소계란중 총계 “53”을 “52”로, 사업소 “24”를 “23”으로 하고, 별정직 7급상당 영양사란중 총계 “10”을 “9”로, 사업소 “8”을 “7”로 하며, 기능직 계란중 총계 “3,965”를 “3,958”로, 본청 “585”를 “576”으로, 사업소 “3,072”를 “3,074”로 하고, 기능6급 소계란중 본청 “14”를 “15”로, 사업소 “243”을 “242”로 하며, 기능6급 전기장란중 본청 “3”을 “4”로, 사업소 “97”을 “96”으로 하고, 기능7급 소계

란중 본청 “47”을 “45”로, 사업소 “242”를 “244”로 하며, 기능7급 기계장란중 본청 “7”을 “6”으로, 사업소 “91”을 “92”로 하고, 기능7급 위생원사역란중 본청 “3”을 “2”로, 사업소 “8”을 “9”로 하며, 기능7급 조무원조무란중 총계 “31”을 “34”로, 사업소 “26”을 “29”로 하고, 기능7급 조무원검수료란을 삭제하며, 기능8급 소계란중 총계 “994”를 “993”으로, 본청 “136”을 “135”로 하고, 기능8급 전기원란중 본청 “6”을 “5”로, 사업소 “116”을 “117”로 하며, 기능8급 운전원란중 본청 “21”을 “22”로, 사업소 “47”을 “46”으로 하고, 기능8급 위생원사역란중 총계 “57”을 “56”으로, 본청 “20”을 “19”로 하며, 기능8급 조무원조무란중 총계 “213”을 “233”으로, 본청 “10”을 “14”로, 사업소 “203”을 “219”로 하고, 기능8급 조무원검수료란을 삭제하며, 기능8급 방호원란중 본청 “17”을 “16”으로, 사업소 “68”을 “69”로 하고, 기능9급 소계란중 총계 “1,546”을 “1,544”로, 본청 “264”를 “260”으로, 사업소 “1,169”를 “1,171”로 하며, 기능9급 전기원란중 본청 “9”를 “8”로, 사업소 “136”을 “137”로 하고, 기능9급 기계원기계란중 본청 “11”을 “10”으로, 사업소 “247”을 “248”로 하며, 기능9급 기계원영사란중 총계 “2”를 “1”로 하고, 본청 “1”을 삭제하며, 기능9급 위생원사역란중 총계 “83”을 “82”로, 사업소 “43”을 “4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워드란중 본청 “70”을 “71”로, 사업소 “50”을 “49”로 하며, 기능9급 조무원조무란중 총계 “309”를 “325”로, 본청 “10”을 “12”로, 사업소 “298”을 “312”로 하고, 기능9급 조무원검수료란을 삭제하며, 기능9급 방호원란중 본청 “33”을 “31”로, 사업소 “119”를 “121”로 하고, 기능10급 소계란중 총계 “849”를 “845”로, 본청 “124”를 “121”로, 사업소 “621”을 “620”으로 하며, 기능10급 전기원란중 본청 “9”를 “8”로, 사업소 “113”을 “114”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란중 본청 “14”를 “15”로, 사업소 “54”를 “53”으로 하며, 기능10급 농림원(원예)란중 본청 “2”를 “1”로, 사업소 “12”를 “13”으로 하고, 기능10급 위생원사역란중 총계 “66”을 “65”로, 본청 “11”을 “10”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워드란중 본청 “47”을 “48”로, 사업소 “19”를 “18”로 하고, 기능10급 조무원조무란중 총계 “110”을 “111”로, 본청 “12”를 “11”로, 사업소 “97”을 “99”로 하며, 기능10급 조무원사송란중 총계 “21”을 “20”으로, 사업소 “20”을 “19”로 하고, 기능10급 조무원검수료란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여유정원 등을 활용하여 2004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편되는 서울시 교통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버스사령실·교통상황실 운영인력 등을 보강하고
- 나. 기능직 조무원직렬의 일부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중 총 92명(일반직 24, 별정직 2, 기능직 66)의 직급·직렬 및 관리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규칙 제3399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동일한 경우에는”을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중 “가산”을 “기산”으로 하고, “제19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건부승진 신청자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별표 2중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	--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제2호·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중 소방공무원란과 별표 11의제2호중 생활지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8의 소방공무원 5급란의 “소방정, 지방소방정”을 삭제한다.

소방정감, 지 방 소방정감	소방감, 지 방 소방감	소방정, 지 방 소방정	소방령, 지 방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 방 소방경, 지 방 소방위	소방장, 지 방 소방장	소방교, 지 방 소방교	소방사, 지 방 소방사
----------------------	--------------------	--------------------	--------------------	---	--------------------	--------------------	--------------------

농업계통의학(수의학 포함),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 교육학(가공교육학 포함), 관광학, 인간공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연구직공무원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4조 및 제19조제6항 관련)**

직 렬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 물	
식물환경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직 렬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직 류		
농업연구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유전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임업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잠업연구	잠 업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축산연구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공연구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직 렬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직 류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토목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축연구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비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제14조 및 제19조제6항 관련)**

직 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 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업계통의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생활지도	생 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0조 관련)**

직 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 무	의 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 무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약 제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선 박	일반선박	선 박	선 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 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선 박	선박항해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생산기계)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지 적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제19조 관련)**

2.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 렬	계급 직류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정 국제교류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정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공보	변호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7)	사회복지사1급(3)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 렬		계급				
		직류	5 급	6 급	7 급	8 급
전 기	원 자 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축 산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수 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산질병관리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직 렬		계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 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12), 조산사(12)	간호사(6), 조산사(6)	간호사(3), 조산사(3)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위생사(12)				
선 박	일반선박	1급항해사(3), 1급기관사(3)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1급기관사, 2급기관사(2)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3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선박항해	1급항해사(3)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3급항해사, 4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선박기관	1급기관사(3)	1급기관사, 2급기관사(2)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건 축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비고 : 제1호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 렬	계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10급
	직류	직류				
운 전	운 전	운 전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선 박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조산사(5), 간호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조산사(2), 간호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조산사, 간호사, 영양사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오물처리사1급(3)	오물처리사1급, 오물처리사2급(2)
사무보조	위 드	위 드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워드프로세서2급, 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직 렬	계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10급
	직류	직종				
	필 기				한글속기1급, 영문속기1급,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한글속기2급, 한글속기3급, 영문속기2급, 영문속기3급,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2급, 한글타자3급, 영문타자2급, 영문타자3급
	계 리				주산1급 이상, 부기1급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고 : 제1호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 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직종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직 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류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년)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약사
	식물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생물공학)
	유전공학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1급(7)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임업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잠업연구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이전 취득
축산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가축위생 연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승강기)

직 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류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응용지질, 기상)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병, 어로, 수산제조)

직 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토목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평,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축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 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직 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수의사(7)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 렬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직 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7급
기 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선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전 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직 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7급
금 속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섬 유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섬유기계, 염색)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생사기사2급(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화 공	일반화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직 렬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류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경영,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가공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축 산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 산	전 직 류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직 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7급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기사	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계급 직 렬 직 류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교 통	교 통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응용지질,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교통)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 렬	직 류			
선 박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생산기계) 5·6급 기관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운송용조종사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직 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7급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측 지	측 지			
통 신 사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송기술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통신 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비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 공무원

직 렬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류	직류		
토 목	토 목	토 목	토 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 선,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 축	건 축	건 축	건 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 신	통 신	통 신	통 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 환	교 환	교 환	교 환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 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 신호, 전기철도)
기 계	기 계	기 계	기 계	산업기사(윤환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 운전, 굴삭기 운전, 불도우저 운전, 천장기중기 운전, 로우더 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운전, 준설선 운전, 로울러 운전, 모우터그레이더 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운전, 지게차 운전, 공기압축기 운전, 양화장치 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 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 렬	직 류		
기 계	영 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 방	난 방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 전	운 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 공	화 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 스	가 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선 박	선 박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향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향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 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 립	영 립 원 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북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오물처리사 2급

직 렬 / 직 류		계 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사무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계리	주산1급, 부기1급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 비고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 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8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8조의3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직업상담사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비율	5%	3%	5%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8의4]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8조의3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교류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 정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공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기업행정	기업행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공업연구	기 계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 계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운할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 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술사 :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생산기계, 조선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동력기계정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전 기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전 기	전 자	기술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공업연구	전 자		
전 기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금 속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업연구	금 속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섬 유	기술사 :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섬유기계, 염색	
공업연구	섬 유	기사 :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산업기사 : 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 : 방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화 공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공업연구	화 공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 학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자 원	자 원	기술사 :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농업연구	작 물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농촌지도	원 예		
농 업	잠 업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잠업연구	잠 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농업연구	식물환경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 업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시설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농업연구	유전공학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방사성, 동 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생활지도	농촌생활 생 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평생교육 사 1급
농업연구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평생 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평생교육 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청소 년지도사 1급, 평생 교육사 2급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방사성, 동 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공연구	농 공	산업기사 : 생산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콤도장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임업연구	임 업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임 업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식물보호	
	가공이용	기술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축 산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축산연구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농촌지도	축 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축위생 연 구	가축위생	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농촌지도		
수 산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경제		
어촌지도	어 촌		
수 산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연구	수산가공		
수 산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연구	수산양식		
수 산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수산연구	수산공학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술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기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산업기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사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경연구	환 경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 경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능장 : 산림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위생사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술사 : 공업화학,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산업기사 : 공업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위생사
교 통	교 통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수도토목		
토목연구	토 목		
토 목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건축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건축연구	건축		
측 지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통신사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제도가 정비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위생사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으로 기술자격증이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가산점 부여대상을 정비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하도록 함(12조제2항).
  - 나.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19조제9항).
  - 다. 승진적체해소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조건부승진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건부승진 신청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35조의2).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점부여를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별표2).
  - 마.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자격을 직렬·직류별로 정비함(별표 3·별표 4, 별표 11).
  - 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위생사에관한법률 등 개정으로 새로운 기술자격증이 신설되고, 일부 기술자격증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임용시험·전직시험에 있어 응시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자격증과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추가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별표5, 별표6제2호, 별표7, 별표8, 별표8의3, 별표8의4).

○서울특별시규칙 제3400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인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번호 5의 위반사항란 중 “물건 등으로”를 “물건 등을”로 하고, 적용법조란의 “법 제86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86조의2제1항제1의2호”로 하며, 부과기준란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과태료 상한금액란의 “500,000원”을 “3,0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2004. 7. 21. 시행)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춰 조정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 상한금액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별표).

**(훈 령)**

서울특별시정원의상근인력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훈령 제934호**

**서울특별시정원의상근인력관리규정중개정 규정**

서울특별시정원의상근인력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매년 7월말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총977명”을 “총970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인사행정과”를 “인사과”로 한다.

별표의 2. 청원경찰의 정수중 총계란 합계 및 경비청원경찰의 “598”을 각각 “591”로, 본청소계란 합계 및 경비청원경찰의 “57”을 각각 “64”로, 비상기획관란의 합계 및 경비청원경찰의 “57”을 각각 “64”로, 사업소소계란 합계 및 경비청원경찰의 “521”을 각각 “507”로, 부서별란중 “전산정보관리소”를 “데이터센터”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란 합계 및 경비청원경찰의 “181”을 각각 “16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광장의 경비를 위한 청원경찰 정수 조정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정원의상근인력의 총수와 부서별 청원경찰의 정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의상근인력을 관리하고, 부서명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광장내의 질서유지 등 경비를 위하여 비상기획관 청원경찰의 정수를 57명에서 64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퇴직 및 인력전환에 따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청원경찰의 정수를 181명에서 167명으로 14명 감축하여 정원의상근인력의 총수를 977명에서 970명으로 조정함(제7조제1항·별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04-696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 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사용지하수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미사용 지하수와 해수에 대한 신고 서식을 정비함
- 나.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에 포함된 해수의 하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업소의 규모, 물의 사용 상황 등과 수조의 규모를 감안하도록 함
- 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함 (오수 → 하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7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참조 : 하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우편번호 : 100-110, 전화번호 : 3707-9914, FAX : 3707-9949, E-mail : dalso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8호**

**서울당산동임대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등포구 당산동 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계획(변경)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 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명 : 서울 당산동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SH개발공사 대표 김승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호)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3가 2-4호
4. 사업 면적 및 규모

구분	사업규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사업비(천원) (국민주택자금)
	지하층	지상층	동	세대수				
아파트	1	17~23	2	195	9,568.40	3,560.50	25,683.50	27,941,657 (9,240,000)

5.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세 대 수	200	195	5세대 감소
건축면적(㎡)	3,667.92	3,560.50	107.42 감소
연 면 적(㎡)	28,106.15	25,683.96	2,422.19 감소
건폐율/용적률(%)	38.33 / 233.70	37.21 / 233.22	1.12/0.48 감소
사 업 기 간	2002. 3~2004.12	2002. 3~2005.12	12개월 연장

※ 기타 경미한 사항

6. 사업시행기간 : 2002. 3 ~ 2005.12
7. 관계도서는 SH공사 재개발팀(☎3410-71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작성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16호(1997.10.7) 및 성북구고시 제1997-81호(1997.10.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6호(2002.12.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48호(2003. 8. 22)로 실시계획 작성 및 변경작성된 『보국문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작성 하였기에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3707-8134),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 및 건설관리과(☎920-34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금회 변경되는 내용에 한하며, 기타 변경없음)
  - 성북구 정릉동 161-17~정릉동 291-1간 (금회 추가 : 성북구 정릉동 397-39 ~ 정릉동 291-1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다. 사업시행 규모 (금회 변경되는 내용에 한하며, 기타 변경없음)
  - 도로확장 : 폭 15m→20m  
연장 980m(금회 추가 30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금회 변경되는 내용에 한하며, 기타 변경없음)

사.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도 협의.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청
-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사업의 종류 :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291-12	대	79	79		이경선	성북구 정릉동 291-1				
2	정릉동 291-13	대	41	41		김기영	성북구 정릉동 291-5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3	정릉동 291-14	대	33	33		송기덕	성북구 정릉동 291-8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4	정릉동 290-77	대	53	53		윤광한	성북구 정릉동 290-26				
5	정릉동 290-62	대	2	2		왕희창	성북구 정릉동 290-26				
6	정릉동 289-62	대	9	9		윤석만	성북구 정릉동 289-50				
7	정릉동 289-63	대	12	12		손호숙	성북구 정릉동 289-30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8	정릉동 289-64	도로	9	9		재무부					
9	정릉동 289-65	대	대	17		김귀용	성북구 정릉동 289-4	새마을금고	성북구 정릉동 299-2		
10	정릉동 289-66	대	25	25		최규태	성북구 정릉동 289-35				
11	정릉동 289-67	대	28	28		유기성	성북구 정릉동 289-1	정릉4동 새마을금고	성북구 정릉동 299-2	근저당	
12	정릉동 289-69	대	45	45		임정식	성북구 정릉동 252-150				
13	정릉동 260-142	대	43	43		노장현	성북구 정릉동 260-71				
14	정릉동 286-19	대	21	21		김용태 방은영 방윤영 김화숙 김찬우	성북구 정릉동 286-18 역삼동 개나리아 32-305 성북구 정릉동 286-2 성북구 정릉동 286-2 도원동 23도원삼성래미안A				
15	정릉동 286-20	대	23	23		김용태	성북구 정릉동 286-18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6	정릉동 286-22	대	104	104		박찬진	잠실동27 개나리아 527-1305				
17	정릉동 285-13	대	35	35		이주환	성북구 정릉동 285-10				
18	정릉동 285-14	대	28	28		서준호	성북구 정릉동 285-11				
19	정릉동 285-15	대	31	31		김수성 김경희	성북구 정릉동 285-3 성북구 정릉동 285-3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20	정릉동 285-16	대	33	33		이경수	동선동3가 207-3 청가와 102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21	정릉동 285-17	대	29	29		김영철	성북구 정릉동 285-12				
22	정릉동 966-276	대	4	4		이성복	정릉동 966-134				
23	정릉동 966-277	대	2	2		이성복	정릉동 966-134				
24	정릉동 298-6	대	14	14		정광민	평창동 72 롯데A101-102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 1가 101-1	근저당	
25	정릉동 298-5	대	155	155		김학균	정릉동 252-88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26	정릉동 299-10	전	54	54		경찰청					
27	정릉동 299-9	대	16	16		재무부 재단법인 기독교대 한감리회 유지재단	중구 태평로1가 64-8				
28	정릉동 303-18	대	20	20		재단법인 기독교대 한감리회 유지재단	중구 태평로1가 64-8				
29	정릉동 303-17	대	32	32		안병영	성북구 정릉동 303-5				
30	정릉동 303-16	대	26	26		안병영	성북구 정릉동 303-5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31	정릉동 303-15	대	52	52		백옥순	성북구 정릉동 303-6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2가 181번지	근저당	
32	정릉동 303-14	대	19	19		남궁 승욱	성북구 정릉동 351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근저당	
33	정릉동 284-54	대	45	45		김순자	정릉동 716-86				
34	정릉동 284-53	대	46	46		김영대	정릉동 333-2	조흥은행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근저당	
35	정릉동 284-52	대	19	19		이주환	정릉동 284-12				
36	정릉동 284-51	도로	9	9		이길환 이기준 이주환	정릉동 266-46 정릉동 195-18 정릉동 284-12				
37	정릉동 284-50	대	24	24		전병훈	정릉동 290-46	새마을금고	성북구 정릉동 284-10	근저당	
38	정릉동 284-49	대	123	123		김애영 김경희 김성한	연희동 434-45 비-301 여의도동47 한성A 바-907 방이동 89 선수촌A211-202				
39	정릉동 284-48	대	7	7		김애영 김경희 김성한	연희동 434-45 비-301 여의도동47 한성A 바-907 방이동 89 선수촌A211-202	중소기업 은행	종로구 견지동 111	근저당	
40	정릉동 284-47	대	60	60		김문용 김원배 김민균 김홍석 김후석 김혜선 김혜영 김숙정	제기동153안암골벽산A 105-1401 분당정자동 169-1 아테나펠리스 에이동 401호 잠원동 한신A 2-501 홍제동 461 홍제삼성래미안A 105-202 제기동153안암골벽산A 105-1401 제기동153안암골벽산A 105-1401 과천시 갈현동 551 행당동347행당대림A 105-1213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41	정릉동 284-46	대	33	33	대왕기업 (주)	성북구 정릉동 284-30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번지	근저당		
42	정릉동 282-3	대	86	86	윤광식	성북구 정릉동 282-3					
43	정릉동 284-45	대	66	66	원옥식 김형대	성북구 정릉동 284-11 성북구 정릉동 284-11					
44	정릉동 415-20	도로	14	14	이경자	성북구 돈암동 538-126					
45	정릉동 415-19	도로	8	8	이경자	성북구 돈암동 538-126					
46	정릉동 415-18	대	74	74	이경자	성북구 돈암동 538-126					
47	정릉동 164-82	대	30	30	이형규	성북구 정릉동 412-22					
48	정릉동 164-81	대	1	1	이경부 문금녀	논현동 172-2 경부빌라 301 압구정동 481 현대A 92-704					
49	정릉동 164-17	대	5	5	조성덕	성북구 정릉동 227-38					
50	정릉동 164-77	대	7	7	이형규	성북구 정릉동 412-22					
51	정릉동 164-78	대	5	5	조성덕	성북구 정릉동 227-38					
52	정릉동 164-80	대	22	22	이경부 문금녀	논현동 172-2 경부빌라 301 압구정동 481 현대A 92-704					
53	정릉동 164-84	대	109	109	조성덕	성북구 정릉동 227-38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사업의 종류 :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291-1	건물(1층)	세멘조	73		이경선	서울 성북구 정릉4동 291-1				
2	정릉동 291-8	건물(지하)	철콘/벽돌조	20		송기덕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1-8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가 9-1	근저당	
		건물(1층)	철콘/벽돌조	20							
		건물(2층)	철콘/벽돌조	20							
3	정릉동 290-26	건물(지하)	철근조	18		윤광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0-26				
		건물(1층)	철근조	35							
		건물(2층)	철근조	46							
		건물(옥탑)	철근조	5							
4	정릉동 289-53	건물(지하)	철콘/슬래브	6		공선웅	서울 성북구 정릉동 341-3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건물(1층)	철콘	6							
		건물(2층)	철콘	6							
5	정릉동 289-30	건물(지하)	연와조	10		손호숙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9-30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건물(1층)	연와조	6							
		건물(2층)	연와조	6							
6	정릉동 289-34	건물(1층)	벽돌조	8		김귀용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9-4	새마을금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9-2	근저당	
		건물(2층)	벽돌조	8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7	정릉동 289-35	건물(1층)	철콘	16		최규태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9-35				
		건물(2층)	철콘	16							
		건물(3층)	철콘	5							
8	정릉동 289-39	건물(1층)	철콘/벽돌조	22		유기성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9-1	새마을 금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9-2	근저당	
		건물(2층)	철콘/벽돌조	22							
9	정릉동 289-41	건물(1층)	철콘	39		임정식	서울 성북구 정릉동 252-150				
		건물(2층)	철콘	29							
		건물(옥탑)	철콘	2							
10	정릉동 260-71	건물(1층)	세멘벽돌조	32		노장현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0-71				
		건물(2층)	세멘벽돌조	26							
11	정릉동 286-18	건물(지하)	철콘/연와조	17		김용태	성북구 정릉동 286-18				
		건물(1층)		17							
		건물(2층)		17							
12	정릉동286-17	건물(지하)	철콘	32		박찬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27 아파트 527동 1305호				
		건물(1층)	철콘	32							
		건물(2층)	철콘	32							
		건물(3층)	철콘	32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3	정릉동285-10	건물(지하)	철콘	2		이주환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4-12				
		건물(지하)	철콘	21							
		건물(1층)	철콘	18							
		건물(2층)	철콘	18							
		건물(3층)	철콘	18							
14	정릉동285-11	건물(지하)	벽돌조	8		서준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5-11	중소 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건물(1층)	벽돌조	22							
		건물(2층)	벽돌조	22							
15	정릉동285-12	건물(지하)	연와조	4		김영철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5-12				
		건물(1층)	연와조	4							
		건물(2층)	연와조	4							
16	정릉동966-134	건물(지하)	철콘	19		이성복	서울 성북구 정릉동 966-134				
		건물(1층)	철콘	10							
		건물(2층)	철콘	10							
		건물(3층)	철콘	10							
		건물(옥탑)	철콘	3							
17	정릉동284-41	건물(지하)	철콘	33		김형대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4-41				
		건물(1층)		33		원옥식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4-41				
		건물(2층)		33							
		건물(옥탑)		3							
18	정릉동282-3	건물(지하)	벽돌조	34		윤광식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2-3				
		건물(1층)	벽돌조	34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8	정릉동282-3	건물(2층)	벽돌조	34							
		건물(옥탑)	벽돌조	7							
19	정릉동284-30	건물(1층)	시멘트블럭조	16	대왕기업	성북구 정릉동 284-30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20	정릉동284-21	건물(1층)		54							
21	정릉동284-13	건물(창고)	시멘트블럭조	5	김병설	성북구 정릉동 286-386					
		건물(화장실)	시멘트블럭조	3							
		건물(1층)	시멘트블럭조	6							
22	정릉동284-40	건물(1층)	벽돌조	19	전병훈	성북구 정릉동 290-46	새마을금고	정릉동 299-2	근저당		
		건물(2층)		19							
		건물(옥탑)		4							
23	정릉동284-12	건물(화장실)	벽돌조	3	이주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84-12					
		건물(1층)	벽돌조	15							
		건물(2층)	벽돌조	15							
24	정릉동284-11		철콘	2	김영대	성북구 정릉동 333-2	조흥은행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		
			철콘	5			현대건설	종로구 계동 140-2	전세권		
		건물(지하)	철콘	7							
		건물(1층)	철콘	7							
		건물(2층)	철콘	7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25	정릉동284-16	건물(지하)	철근/벽돌조	28		김순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716-86				
		건물(1층)	철근/벽돌조	28							
		건물(2층)	철근/벽돌조	28							
		건물(3층)	철근/벽돌조	28							
		건물(4층)	철근/벽돌조	28							
		건물(옥탑)		4							
26	정릉동303-10	건물(1층)	연와조	21		남궁 승욱	성북구 정릉동 351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건물(2층)		21							
		건물(1층)		2							
27	정릉동303-06	건물(지하)	철근/연와조	52		백옥순	성북구 정릉동 303-6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건물(1층)		52							
		건물(2층)		52							
		건물(옥탑)		5							
		건물(1층)		8							

연번	물건지 주 소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28	정릉동304-04	건물(지하)	벽돌조	72		안병영	성북구 정릉동 303-5				
		건물(1층)		72							
		건물(2층)		72							
29	정릉동303-2	건물(1층)	블록조	44	감리회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30	정릉동299-06	건물(1층)	벽돌조	1	서울시						
		건물(1층)		28							
		건물(2층)		28							
31	정릉동966-1	건물(1층)	철콘	33	서울시						
		건물(2층)		25							
		건물(계단)		4							
32	정릉동298-02	건물(지하)	철콘/ 벽돌조	141	김학균	성북구 정릉동 252-88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건물(1층)		112							
		건물(2층)		112							
		건물(옥탑)		20							
33	정릉동298-04	건물(1층)	연와조	10	정광민	평창동 72 롯데A 101-102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 1가 1-1			
34	정릉동291-05	담장		1식	김기영	성북구 정릉동 291-5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 18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과 도시계획 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 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교육여건 개선을 위 하여 교사시설 및 도서관 등을 증축 하기 위한 세부조성계획 변경
2.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가. 건축규모 변경 결정 조서
    - 건폐율
      - 기정 : 22%이하
      - 변경 : 25.54%이하
      - 증·감 : (증)3.54%
    - 용적율
      - 기정 : 91%이하
      - 변경 : 105.57%이하
      - 증·감 : (증)14.57%
    - 높이의 범위
      - 기정 : 15층이하
      - 변경 : 15층이하
  - ※ 건물의 규모, 배치 등 상세내용은 고 시도면에 의함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731-6347) 및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820-981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제25조에의거 도시계획시설(학 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서울산업대학교의 교사 및 기숙사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 기정 : 12%이하
      - 변경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3.06%이하
        - 자연녹지지역 : 4.53%이하
    - 용적율
      - 기정 : 36%이하
      - 변경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6.58%
        - 자연녹지지역 : 11.61%
    - 높이의 범위
      - 기정 : 8층 25.9m이하
      - 변경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2층이하
        - 자연녹지지역 : 4층이하
  - ※ 건물의 규모, 배치 등 상세내용은 고 시도면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아래장 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개발과  
(☎ 950-338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731-6347)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가.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3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116호(1998. 4.1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63호(2003. 9.15)로 구역변경지정된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	서초구 방배동 2634번지일대	20,885	20,879	감 6	입대아파트 부지면적정정

- 나. 정비계획의 변경
- 1)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명 칭	면 적(m <sup>2</sup>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20,885	20,879	- 6	100	
정비기반시설 등(녹지)		2,190	2,190	변경없음	10.5	
택 지	소계	18,695	18,689	- 6	89.5	
	택지1	2,002	1,996	- 6	9.5	
	택지2	16,388	16,388	변경없음	78.5	
	택지3	305	305	변경없음	1.5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다. 변경사유 : 임대아파트부지 면적정정에 따른 구역면적 정정  
 라. 관계도면 : 시민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와 같음  
 마.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33) 및 서초구 건축과(☎ 570-608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주택재개발사업및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2010년을 목표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3707-8233~8)
  - 자치구

구 별	열람부서	전 화	주 소
종로구	주택과	731-1426	종로구 삼봉길 50
중 구	주택과	2260-1380	중구 배오개길 76
용산구	주택과	710-3380	용산구 백범로 78
성동구	주택과	2286-5595	성동구 청계천로 540
광진구	도시개발과	450-1385	광진구 자양로 150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1	동대문구 하정로 145
중랑구	주택과	490-3450	중랑구 봉화산길 179
성북구	도시개발과	920-3720	성북구 보문로 168
강북구	주택과	901-6380	강북구 수유3동 192-59
도봉구	도시정비과	2289-1806	도봉구 마들길 656
노원구	도시정비과	950-3386	노원구 노해길 183
은평구	주택과	350-1381	은평구 은평구청길 8
서대문구	도시개발과	330-1455	서대문구 연희로 165
마포구	주택과	330-2961	마포구 성산로 557
양천구	도시주택과	2650-3380	양천구 목동동로 75
강서구	주택과	2200-6380	강서구 화곡로 153
구로구	도시개발과	860-2384	구로구 가마산길 340

구 별	열람부서	전 화	주 소
금 천 구	주 택 과	890-2380	금천구 시흥대로 483
영등포구	도시관리과	2670-3650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동 작 구	도시관리과	820-9179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관 약 구	주 택 과	880-3380	관악구 관악로 462
서 초 구	건 축 과	570-6390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강 남 구	주 택 과	510-1380	강남구 학동로 426
송 파 구	주 택 과	410-3380	송파구 올림픽로 326
강 동 구	주 택 과	480-1380	강동구 성내동길 27

3. 본 기본계획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7호

#### 노외주차장설치및사용개시

1. 주차장법 제1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함을 고시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과(☎6321-4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주차장명 : 북정역 환승주차장  
 나. 위치·면적 : 송파구 장지동 561-9일대 (18,000㎡)  
 다. 시설규모 : 승용차 주차 370대, 버스 승차대 12대  
 라. 사용개시일 : 2004. 7. 1(목)  
 마. 운영방법  
 (1) 운영시간 : 07:00 ~ 23:00 (평일, 공휴일 동일)  
 (2) 주차요금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5급지 주차요금 적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8호

#### 2004년벼병해충방제계획

식물방역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2004년 벼 병해충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기본방향
  - 방제대상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로 적기방제 추진
  - 농약사용 횟수를 줄이면서 방제효과를 높이는 공동방제, 항공방제 실시
2. 방제대상지역 및 일시
  - 벼 재배지역에 대해 2004. 6월~2004. 9월 중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 실시
3.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 병 :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
  - 해충 : 벼멸구류, 벼흑명나방, 벼물바구미, 이화명나방, 멸강나방, 벼잎벌레
4. 방제계획 면적 : 4,290ha(식부계획면적 572ha × 7.5회)
  - 병 : 2,002ha (식부계획면적 572ha × 3.5회 방제)
  - 해충 : 2,288ha (식부계획면적 572ha × 4회 방제)

5. 방제요령

- 지역별, 시기별 병해충 발생상황에 따라  
공동·자율·항공방제 등으로 실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지역실  
정에 맞도록 추진

6. 항공방제 지원계획

- 지원기관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  
시소방방제본부, 강서구청, 강서농협
- 지원내용 :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방제(457ha×4회)에 소요되는 농  
약소요액 (30,886천원)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690호**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2004-9호
2. 허가년월일 : 2004년 6월 17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뉴웨이브인서울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31-4 오생빌딩 3층

5. 대표자 : 박은경

6. 설립목적 :

- 디자이너 간 정보교류와 상호발전 및 섬유산업 등 타산업과의 연계발전을 통한 패션산업의 활성화 도모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691호**

**전력시설물의설계업(감리업)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종	등록일자
서울S-1-288	(주)코담	송가철	서초구 방배동 882-30	110111-2987597	종합감리업	2004. 06.18
서울E-2-268	엔지니어링				전문설계업(1종)	
서울S-2-228	(주)복지	이재경	영등포구 대림3동 692	110111-3023431	전문감리업	2004. 06.18
서울E-2-269	종합이엔지				전문설계업(1종)	

○공고문 문의 : 소비자보호과 ☎3707-933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698호**

**지적측량업의등록(신규)**

지적법 제4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업종 : 지적측량업 등록
- 상호 : 주식회사 삼경종합기술단
- 대표자 : 김산

○주민등록번호 : 591129-1\*\*\*\*\*

○영업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1-8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측량)

○등록일자 : 2004. 6.2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700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153호
  - 상호 : 시너지월드 와이드코리아(주)
  - 대표자 : 다렌 지호그
- 변경내용
  - 변경일 : 2004. 5.31
  - 변경전
    - 상호 : 네이쳐스션샤인코리아(주)
  - 변경후
    - 상호 :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주)

나. 수리일자 : 2004년 6월 21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02)3707-9336)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법인등록번호 : 110111-1562754

○ 등록일 : 2004. 6.22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701호**

**문화재수리업자등록**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 제1항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를 등록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 업종 및 등록번호 :
  - 실측·설계업 02-01-0001
- 상호 : (주)선재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 옥헌
- 영업소재지 :
  - 강남구 도곡동 420-15 덕윤빌딩 5층

**구 고 시**

2004년 6월 25일  
중 구 청 장

**◎중구고시 제2004-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학교)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중구고시제2004-38호(2004. 5. 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학교)시행을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 88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률 시행령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사업지구 안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통지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3-370,579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학교)  
○사업의 명칭 : 신당4동 마을마당조성  
다. 면적 : 당초 - 1,323㎡  
          변경 - 1,323㎡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배오개길 76번지 (예관동120-1)
- 마. 사업의 기간 : 2004. 5. ~ 2005.12
- 바. 변경사유 : 공공공지와 학교용지 요철부분 상호교환.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토지 및 건물 편입조서**

○토지 조서(동일면적 토지이동)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이동 면적	잔유 면적	소유자 성명	비고 (시설별)
1	신당동	333-579	학교용지	11,906	66	11,840	학교법인 서정학원	학교→공공공지로 66㎡ 이동
2	신당동	333-369	대	102	34	68	중구청	공공공지→학교로 34㎡ 이동
2	신당동	333-373	대	116	32	84	중구청	공공공지→학교로 32㎡ 이동
합 계				12,124	132	11,992	필지별 토지 교환면적	

○건축물 현황

단위 : ㎡

지 번	구조	연 면적	용 도	소 유 자	비 고
신당동 333-579	스레트/브릭조	52	주택	최 윤 석	기존 무허가 건물
신당동 333-579	기와/브릭조	66	주택	김 성 태	“
계	2동	118	-	-	

**◎용산구고시 제2004-5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수도)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3(2004. 5. 31.)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수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용산구 도시정비과(☎710-3385) 및 지적과(☎710-349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수도) 지형도면 작성고시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 원	도시자연 공 원	용산구 한남동 산10-33일대	2,921,452	감)23,140	2,898,312	1940. 3.12.	
변경	수 도		용산구 한남동 산10-33일대	87,783	감)76,048.25	11,734.75	1977.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52,908㎡</li> <li>•학교:23,140㎡ (보광정수장)</li> </ul>
신설	학 교	외국인 학 교	용산구 한남동 산10-33일대	-	증)23,140	23,1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규모 -건폐율60%이내 -용적률150%이내 -높이의규모 3층 (12m)이하</li> </ul>

나.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성북구고시 제2004-7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25-2호 외 322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주택법 제16조 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위치 :

성북구 돈암동 525-2호 외322필지

3.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북아리랑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용규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27-36번지

○ 성명 : 일신건영(주) 대표자 조 태 성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0-2호

4.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 6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시행기간 : 2003.10 ~ 2005. 5.

6. 사업계획변경 승인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연 면 적	115,130.06㎡		115,090.42㎡		감) 39.64㎡		
용 적 율	286.18%		285.86%		감) 0.32%		
관리노인정	412.13㎡		337.95㎡		감) 74.18㎡		
지하주차장 17P-5동	3,163.75㎡ (지하 2층)		3,155.79㎡ (지하 3층)		감) 7.96㎡		
7. 변경내용 및 기타 관련 도서는 성북구청 주택과(☎920-3383)에 비치함				2004년 6월 25일 성 북 구 청 장			
<p>◎성북구고시 제2004-75호</p> <p>보문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지형도면</p> <p>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5호(2002. 6.27)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10번지 일대의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p> <p>■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p>			
구 분	구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보 문 생활권중심	성북구 보문동 10번지 일원	45,880	-	45,880	1996. 7. 13. (서울시고시 제96-195호)	1998. 2. 6 구역증가 (보문시장 5,78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45,880	-	45,880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결정		

2) 용도지구 조서 ■ 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비 고
기정		보문로	중심지 미관지구	대광고교~ 동소문동	40,800	1,800	양측 12	서울시고시 제164호 (82. 4. 22)
■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보문시장	보문동 1-1번지 일원	4,234.2	-	4,234.2	건교부고시 제783호 (64. 2. 12)	
3) 도시기반시설 조서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획지계획 ■ 단위대지 최대개발규모 : 변경 <변경전>								
구 분	적 용 구 역	공동건축 최대개발규모						
간선도로변	보 문 로 (25m)	1,500㎡이하						
이면도로변	이면도로변	1,000㎡이하						
<변경후>								
구 분	적 용 구 역	공동건축 최대개발규모						
간선도로변	보 문 로 (25m)	1,500㎡이하						
이면도로변	이면도로변	1,000㎡이하						
주) 단, 보문시장부지는 제외(신설)								
☑ 단위대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획지계획사유서 (신설)								
획지위치	공동건축 개발규모(㎡)	계획사유서						
보문동 1-1번지 일대	4,234.2	기존 재래시장부지로서 실제 단위대지 개념의 토지임						

■ 단위대지 최소개발규모 : 변경

<변경전>

구 분	적 용 구 역	최소개발규모
간선도로변	폭원 20m이상의 도로변	90m <sup>2</sup> 이상

<변경후>

구 분	적 용 구 역	최소개발규모
간선도로변	폭원 20m이상의 도로변	60m <sup>2</sup> 이상(변경)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1) 건축물 용도계획

■ 불허용도(전지역) : 변경

<변경전>

-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 절대 및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 50m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 200m이내
  - 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변경후>

-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신설)

○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신설)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 절대 및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 50m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 200m이내
- 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2)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변경

<변경전>

기준용적률	○간선교차로변 500%, 간선도로변 450%, 이면도로변 400%이하
허용용적률	○간선교차로변 600%, 간선도로변 540%, 이면도로변 480%이하

<변경후>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변경전(일반주거지역) 법정용적률 : 300%이하(변경)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은 360%이하 (변경)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부칙제4조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400%이하로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433%이하 (변경)

■ 상한용적률 산정방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함.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 변경

<변경전>

완화조건	완화내용
1층권장용도로 건축시	10%
전층권장용도로 건축시	20%
지정된 용도가 건물전체 연면적의 50%이상시	30%
대지의 일부를 공공보차통로, 공동주차통로, 건축한계선 등을 설치시	(제공된 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공동건축 또는 합벽건축시	2필지이상 - 5필지미만 : 30% 5필지이상 - 6필지미만 : 40% 6필지이상 : 50%
탑상형 건축물	40%
공동주차장 조성시	20%
공개공지 설치시	[공개공지면적 - 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건폐율을 낮추었을 경우	(법적건폐율 - 신청건폐율) × 5
연접하여 공개공지 설치시	10%
주 전면도로에서 전면공지 추가 확보시	(제공된 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변경후>

구 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대지에 관한사항	공동건축(규제)	규제사항 준수시	3필지이하 : 20% (변경) 5필지이하 : 30% (변경) 6필지이상 : 40% (변경)
	공동건축(권장)	권장사항 준수시	
용도에 관한사항	1층전면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15% (변경)
	전층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전층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 기준용적률(단, 50%를 초과할수 없음) (변경)
규모에 관한사항	건폐율	40%이하 수용시	30% (변경)
		45%이하 수용시	20% (변경)
		50%이하 수용시	10% (변경)
외관에 관한사항	지하철과 지하연결통로 조성	권장사항 준수시	30% (신설)
	탑상형 건축물	권장사항 준수시	20% (변경)
대지내공지에 관한사항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시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1.5× 기준용적률 (변경)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규제사항 준수시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건축한계선	규제사항 준수시	(조성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주차에 관한사항	공동주차 출입구	규제사항 준수시	5% (변경)
기타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획지내 기준수목 보존	권장사항 준수시	15% (신설)

(3) 건폐율 계획 ■ 건폐율 계획기준 : 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준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4) 건축물 높이계획 ■ 최고높이, 최저높이계획 : 변경			
<변경전>			
구 분	최고높이	최저높이	비 고
간선가로변	15층	3층	○보문로변
이면도로변	8층	3층	○주변 주거지에 접하지 않은 이면도로변
	7층	-	○주변 주거지에 접한 8m 도로변
	5층	-	○주변 주거지에 접한 6m 도로변
<변경후>			
구 분	최고높이	최저높이	비 고
간선가로변	45m(변경)	- (폐지)	○보문로변
이면도로변	24m(변경)	- (폐지)	○주변 주거지에 접하지 않은 이면도로변
	21m(변경)	-	○주변 주거지에 접한 8m 도로변
	15m(변경)	-	○주변 주거지에 접한 6m 도로변
	45m(신설)	-	○보문시장
■ 완화적용기준 : 변경없음 ○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 ×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3) 기타계획 ■ 기부채납 : 신설 ○ 보문동 4가 1-1번지 일대 보문시장은 재건축시 대지면적의 10%이상을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 ■ 건축허가전 사전심의 : 신설			
○ 보문동 4가 1-1번지 일대 보문시장은 재건축시 세부계획내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 사전심의후 건축허가 처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서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920-3723) 및 재무국 지적과(☎920-3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고시 제2004-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  
인가

-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3-99호 (2003.11.10)로 실시계획인가 하고, 서울 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04-59호(2004. 5. 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한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 치수과(☎02-901-6220) 및 건설관리과 (☎02-901-6212)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구분 : 당초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지 위치 : 강북구 미아3동  
245-34~번2동 441-1
- 규모 : B=12~30m, L=1,065m
-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738호(1963.12.24),  
강북구 고시 제2003-80호(2003.9.5)
  
- 구분 : 변경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지 위치 :  
미아3동 245-34 ~ 번2동 441-1  
미아동 258-419 ~ 미아동 258-347

- 규모 : B=12~30m, L=1,065m  
B=9m, L=26m
-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738호(1963.12.24),  
강북구고시 제2003-80호(2003. 9. 5),  
강북구 고시 제2003-118호(2004. 1. 5)
- 비고 : 본선 접속도로 추가
-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강북구청  
장(강북구 수유3동 구청길 12)-변경  
없음
-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고  
시일로부터 2006.12.31.까지-변경없음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  
지 지번·지목 및 면적과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추가분)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치  
수과(☎ 02-901-6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의 명칭 :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245-70	대	95	95		장현성	강남구 도곡동91-5 도곡동삼성래미안A 102-1701				
2	미아동 245-71	대	5	5		진용학	강북구 미아동 245-30	(주)조흥 은행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근저 당권	
3	미아동 258-757	대	12	12		서봉수	강북구 미아동 258-347				
4	미아동 258-384	대	126	126		장형식	성북구 삼선동1가 129				
5	미아동 245-33	도	17	14		오순영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A 2-1704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사업의 명칭 :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종 류	수량 (㎡)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245-30	건물	37		진용학	미아동 245-30	(주)조흥 은행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근저 당권	1층21
		화장실	1식							2층13
2	미아동 245-14	기타	1식	48.91/586.2	김득주	미아동 245-14 양지빌라지층1호				
				40.79/586.2	임정순	미아동 245-14 양지빌라지층3호				
				48.91/586.2	조태선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1층1호				
				24.21/586.2	서복희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1층2호				
				24.21/586.2	김용철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1층2호				
				43.37/586.2	최일두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1층3호				
				45.58/586.2	김행열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2층1호				
				48.42/586.2	지재길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2층2호				
				43.37/586.2	정상열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2층3호				
				43.60/586.2	정종관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3층1호				
				44.87/586.2	표상빈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3층2호				
				36.73/586.2	이미희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3층3호				
				31.71/586.2	심욱자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4층1호				
				34.22/586.2	이경숙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4층2호				
27.30/586.2	구기춘	미아동 245-14 양지빌라 4층3호								

**◎강북구고시 제2004-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04-197 (2004. 5.31)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열람 공고한 『미아4동 53~4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목치수과(☎901-6216) 및 건설관리과(☎901-620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연번 : 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미아4동 53~49간 도로개설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미아4동 53-1~49-109
- 규모 : B=6m, L=50m
- 결정고시 :  
강북구고시 제42호('04. 5.20)
- 지형도면고시 :  
강북구고시 제42호('04. 5.20)

나.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소유권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 별첨

-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개설)
- 사업명 : 미아4동 53~49간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1	미아4동 855-6	대	119	119	국(재무부)					
2	미아4동 53-47	대	16	16	이후봉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수서택지개발지구5블럭 한이름아파트 102동 1504호	(주)제일 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잠실지점)	근저당 권설정	
3	미아4동 53-39	대	26	26	박준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6-1	한국양토 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길동 400 (미아중앙지소)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 정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개설)
- 사업명 : 미아4동 53~49간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수량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1	미아4동 855-6	건물 기타	67 1식	1/2	박병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49 현대아파트 209-402	(주)한일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추가근저당 권설정	무허가	
							(주)제일 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권 설정		
		건물 기타	67 1식	1/2	이정순		권수진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 213동 1806호	전세권 설 정		
							김혜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04-3 미진아파트606	전세권 설 정		
2	미아4동 53-39	건물 기타	22 1식		박준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6-1				무허가	
3	미아4동 49-109	건물 기타	20 1식		김병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9-110					

◎도봉구고시 제2004-44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녹지조성)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4-1 (2004. 1.10)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고 도봉구고시 제2004-12(2004. 3.10)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하여 도봉구고시 제2004-18(2004. 4. 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의거하여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및 토목하수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번지의 10필지(변경없음)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변경없음)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녹지조성)
  - 사업의 명칭 :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조성
- 라.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 면적 : 5,271㎡
  - 사업규모 : 수경시설, 휴게시설, 산책로, 간이운동시설등
- 마. 사업기간 : 2004. 3. ~ 2005.12.31.(변경없음)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변경)

토 지 조 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계	11필지	-	5,491	5,271	-	-	-	-	
1	기정 도봉동 35-1	답	249	249	민원기 (지분 10869분의 7.37) 양성철 (지분 10869분의 7.37) 김상석 (지분 10869분의 7.37) 서용승 (지분 10869분의 7.37) 오명해 (지분 10869분의 10839.52)	도봉구 도봉동 579-7 강남구 삼성동 24-25 도봉구 창동 246-2 도봉구 방학동 661-22 강북구 수유6동 522-18 한마음빌라 나동 201호	-	-	

**토 지 조 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변경	도봉동 35-1	답	249	249	민 원 기 (지분 10869분의 7.37) 양 성 철 (지분 10869분의 7.37) 김 상 석 (지분 10869분의 7.37) 서 용 승 (지분 10869분의 7.37) 오 명 해 (지분 10869분의 10839.52)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463-3 강남구 논현동 131-21 4층 노원구 상계3동 140-202 도봉구 방학동 274 삼익세라믹 105동 210호 강북구 수유동 530-105 동아하이츠 B03	-	-	성명 및 주소 변경
11	기정	도봉동 44-10	전	253	170	이 영 미	도봉동 558-29	-	-	
	변경	도봉동 44-10	전	253	170	이 영 미	노원구 상계5동 456-154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동의정부지점)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289-1398) 및 토목하수과(☎2289-1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고시 제2004-46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조성)실시계획인가**

1. 노원구고시 제2004-17호(2004. 3.20)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 2004-151호(2004. 5.15)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람공고한 노원구 상계2동 373-13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노원구청 공원녹지과(☎950-38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373-13번지 외 1필지

나. 사업시행자 :

1) 성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2) 사업의 명칭 :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

라. 사업의 내용

1) 면적 : 1,341㎡

2) 사업규모 :  
 기반시설, 휴양시설, 수목식재 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사. 공람장소 :  
 노원구 공원녹지과(☎ 950-3395~7)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73-13번지 외 1필지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 사업명 :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자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341	1,341						
1	상계2동 373-13번지	전	1,134	1,134	정용혜	노원구 상계동 353-1	한국휴팩카드 유한회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근저당권	
							한국휴팩카드 유한회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지상권	
2	상계2동 322-37번지	전	207	207	전종대	중구 신당동 290-72	-	-	-	

**◎노원구고시 제2004-48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  
작성**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구분 : 변경
- 시설명 : 학교

○시설의 세분 :

광운중학교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위치 :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

○면적

- 기정 : 30,976㎡
- 변경 : 감10㎡
- 변경후 : 30,966㎡

○최초결정일 : '88. 1.26

○비고

- 토지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감10㎡
- 학교용지 일부 제척 : 감26㎡
- 학교용지 일부 편입 : 증26㎡

2. 관련도면 : 게재생략(노원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950-386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은평구고시 제2004-58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4-35 (2004. 5.10)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제2004-288(2004. 5.31)호로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마을숲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은평구 불광동 480번지 182호 일대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0-16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은 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은평구 불광동 480번지 182호 일대
-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마을숲조성)
  - ② 사업의 명칭 : 불광3동 마을숲 조성
- 다. 사업시행규모 : 414㎡
- 라.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① 성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②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04.12.31까지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토 지(물건)조 서**  
**(집합건물)**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마을숲조성)

연번	소재 자연	물건 종 류 (집합 건물)	구조및 규격	지적면적(㎡)			소유자(권리자)		이해관계인		관리의 종류
				토지	건 물	대지권 비율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2필지	2동		414	494.79						
1	불광3동 480-182	건물	벽돌조/평 슬래브지붕	168	1층101호 39.24	168분의 26.77	이민정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72 동문그린시티아파트 516-201	한국주택 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청계지점)	근저당
2	"	"	"		1층102호 42.84	168분의 29.23	김광진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0-182 새한빌라 비동 102호	한국주택 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청계지점)	근저당
3	"	"	"		2층201호 39.24	168분의 26.77	서현수	서울 성북구 장위동 214-83			
4	"	"	"		2층202호 42.84	168분의 29.23	신경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6 초원아파트 706-504			
5	"	"	"		지층1호 39.24	168분의 26.77	박노아	서울 구로구 개봉동 370-8			
6	"	"	"		지층2호 42.84	168분의 29.23	홍현배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2 한양아파트 비-407호			
7	불광3동 480-389	"	"	246	1층101호 42.84	246분의 42.40	안학동	서울 강동구 명일동15 삼익아파트301-1005			
8	"	"	"		1층102호 38.97	246분의 38.57	이덕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아파트 216-903			
9	"	"	"		2층201호 42.84	246분의 42.40	이명섭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0-389 새한빌라 에이동 201호			
10	"	"	"		2층202호 38.97	246분의 38.57	이결휘 (소유자) 이명숙 (권리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470-10 10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91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연서지점)	근저당
11	"	"	"		지층1호 44.40	246분의 43.95	정성남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6-36	한빛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광희동지점)	근저당
12	"	"	"		지층2호 40.53	246분의 40.11	황태수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0-389 지층 2호	한국주택 은행 이시우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청계지점) 은평구 불광동 353-38	근저당 전세권 (건물)

◎서대문구고시 제2004-5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지형도면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을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입안취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북아현2동 243-13 일대는 소방도로 신설 및 공원조성 사업에 의한 확대보상 잔여지가 포함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소요경비가 경제적인 지역으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편의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구분 : 신설
- 시설명 : 주차장
- 위치 : 북아현2동 243-13외 16필지
- 면적 : 770.5㎡
- 최초결정일 : -

다. 관련도서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

◎양천구고시 제2004-39호

대경연합연립재건축(1단지)사업계획변경 승인

- 1. 양천구 신월4동 423-3번지외 14필지상 대경연합연립재건축(1단지)조합(조합장:김일성) 및 벽산건설(주)(대표:정종득)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명 :

대경연합연립재건축(1단지)주택사업

나. 공동사업주체 :

- 성명 : 대경연합연립재건축(1단지) 주택조합 조합장 김일성  
주소 : 양천구 신월4동 421-2호
- 성명 : 벽산건설(주) 대표 정종득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다. 사업시행개요

- 위치 : 양천구 신월4동 423-3번지외 14필지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8,074.88㎡
- 연면적 : 25,336.67㎡
- 용적률 : 244.81%
- 건축면적 : 1,940.36㎡
- 건폐율 : 23.68%
- 규모 : 지하1층, 지상9~14층 2개동 2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2004. 6 ~ 2006. 6

마.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양천구고시 제2004-40호**

**대경연합연립재건축(2단지)사업계획변경 승인**

1. 양천구 신월4동 414-2번지의 15필지상 대경연합연립재건축(2단지)조합(조합장:김일성) 및 벽산건설(주)(대표:정종득)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명 : 대경연합연립재건축(2단지)주택사업

- 나. 공동사업주체 :
- 성명 : 대경연합연립재건축(2단지) 주택조합 조합장 김일성
  - 주소 : 양천구 신월4동 421-2호
  - 성명 : 벽산건설(주) 대표 정종득
  -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다. 사업시행개요

- 위치 : 양천구 신월4동 414-2번지외 15필지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9,111.96㎡
- 연면적 : 29,883.46㎡
- 용적률 : 249.22%
- 건축면적 : 2,208.44㎡
- 건폐율 : 24.24%

- 규모 : 지하1층, 지상8~14층 3개동 2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라. 사업시행기간 : 2004. 6 ~ 2006. 6
- 마.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양천구고시 제2004-41호**

**대경연합연립재건축(3단지)사업계획변경 승인**

1. 양천구 신월4동 422-4번지의 2필지상 대경연합연립재건축(3단지)조합(조합장:김일성) 및 벽산건설(주)(대표:정종득)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명 : 대경연합연립재건축(3단지)주택사업

- 나. 공동사업주체 :
- 성명 : 대경연합연립재건축(3단지) 주택조합 조합장 김일성
  - 주소 : 양천구 신월4동 421-2호
  - 성명 : 벽산건설(주) 대표 정종득
  -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다. 사업시행개요

- 위치 : 양천구 신월4동 422-4번지외 2필지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1,921.39㎡

- 연면적 : 5,440.26㎡
  - 용적률 : 228.95%
  - 건축면적 : 425.04㎡
  - 건폐율 : 22.12%
  - 규모 : 지하1층, 지상12층 1개동 48세대 및 부대시설
- 라. 사업시행기간 : 2004. 6 ~ 2006. 6
- 마.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강서구고시 제2004-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1호(2001. 10.20)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되고 강서구고시 제2003-38호(2003. 5.30)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강서구 화곡동 1093-76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도시 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강 서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화곡동 1093-76번지 일대 (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
  - 명칭 : 운동장 부지내 일부 도로정리 및 부지정지 공사
- 3)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면적 : 29,100㎡ (변경없음)
  - 운동장 부지내 부지정지 공사
    - 주요 시설계획(변경없음)
      - 옹벽계획 : H=1~4.8m. L=90.0m
      - 자연석쌓기 : H= 2m. L=19m
    - 도로 선형 (변경없음)
    - 조경부지 면적 : 7,824.1㎡(변경없음)
    - 주차부지 : 209대 (주차면수는 변경없으며,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고려 직각 주차에서 사선 주차로 부분 변경)
    - 기타 일부시설물 (변경없음)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8-4
  - 성명 : 새마을운동중앙회장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01. 12. ~ 2002. 5.
  - 변경 : 2001. 12. ~ 2004. 6.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 변경없음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해당사항없음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 9)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 도면과 같음.

**◎강서구고시 제2004-58호**

**김포가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서울 도시가스특별계획구역(문화시설)지구단위 계획(세부개발계획)변경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78호(2004. 6.15)로 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울 도시가스 특별계획구역(문화시설) 지구단위 계획(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된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강 서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  
가. 용적률 및 높이계획에 관한 변경결정 내용

구분	시설명	위 치	건 축 계 획		최초결정일	비고
			용 적 률	높 이		
기정	문화시설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일대	기 준: 150%이하 허용(상한): 200%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최고높이: 20m이하	서고2002-205호 2002.5.31	
변경	문화시설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일대	기 준: 200%이하 허용(상한): 250%이하	최고층수: 6층이하 최고높이: 30m이하		

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관한 변경결정 내용

구분	적 용 기 준		계산식(기준용적률의 완화)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기정	형태 외관	탑상형 건물	기준용적률×0.1	해당사항없음	
		경사지붕(5층이하에만 적용)	기준용적률×0.1	해당사항없음	
	차량 주차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0.15	해당사항없음	
		주차공간의 추가확보 (법정주차대수 기준의 10%이상 조성시)	기준용적률×0.1	해당사항없음	
변경	형태 외관	탑상형 건물	기준용적률×0.1	해당사항없음	
		경사지붕(5층이하에만 적용)	기준용적률×0.1	해당사항없음	
	옥상조경	기준용적률×0.1	좌 동	신설	
	차량 주차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0.15	해당사항없음	
		주차공간의 추가확보 (법정주차대수 기준의 10%이상 조성시)	기준용적률×0.1	좌 동	적용

2. 기타 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도시가스 특별계획구역(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사항과 같음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2600-6656)에 비치.

◎구로구고시 제2004-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1981. 2.16)로 지형도면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 2002-34호(2002. 4.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한 『구로본동 구로변전소옆 도로개설공사』의 고시 내용중 “경미한 변경요인(사업기간 변경 등)” 이 있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구로구청 토목과(☎860-2405)와 건설관리과(☎860-24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구로구 구로본동 486-4~490-9번지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구로본동 구로변전소옆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B=8m, L=11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435번지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06. 4.15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영업권, 기타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관악구고시 제2004-4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83호(2004. 6. )로 결정 및 변경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880-3386~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지형도면 작성 조서

○구분 : 변경

○공원명 : 합실공원

○시설의 세분 : 어린이공원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704-4번지 일대

○면적

- 기정 : 1,500㎡

- 변경 : 감)203㎡

- 변경후 : 1,297㎡

○최초결정일 :

서고 제321호(1992.10.10)

○구분 : 신설

○공원명 : 공원

○시설의 세분 : 어린이공원

○위치 : 관악구 신림동 322번지

○면적

- 기정 : -

- 변경 : 증)250㎡

- 변경후 : 250m<sup>2</sup>
- 최초결정일 : -
- 비고 : 공원 대체부지
- 나. 관계도서 : 생략(관악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관악구고시 제2004-49호**

**도시계획시설(신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465호('71. 8. 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27호(2004. 5.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4-39호(2004. 6. 5)로 지형도면 승인 된 관악구 신림동 산197-31번지 일대의 신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사회진흥과(☎80-31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관 악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신림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 명칭 :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 공사
-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97-31의 1필지
- 다. 사업규모 : 지상1층 지상3층(연면적 1,978m<sup>2</sup>)
-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0-1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0-1
- 사업의 종류 :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864						
1	관악구 신림동 산197-31	임야	16,529	1,467	체육 시설	서울 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2	관악구 신림동 산196	임야	397	397	임야	채일남	동작구 흑석동 186-20 명수대 삼익빌라 B동1호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관악구고시 제2004-50호**

**봉천제7-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지형도면승인**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27호(1992. 7.14), 제1996-187호(1996. 7. 6), 제1999-342호(1999.11. 4), 제2000-62호(2000. 3.24), 제2003-153호(2003. 6.13), 제2004-61(2004. 2.27)로 구역변경 지정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같은 고시 제2004-197호(2004. 6.21)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과(☎ 880-38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관 악 구 청 장

- 가.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 1) 명칭 : 봉천제7-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2)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89번지 일대
  - 3) 면적 : 97,103.7㎡
- 나. 지형도면 승인도서 : 생략(지형도면 승인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습니다)

**◎서초구고시 제2004-31호**

**서초동꽃마을연립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아파트재건축)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동법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 꽃마을연립주택재건축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꽃마을연립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유기  
에스케이건설(주) 대표 손관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초구 서초동 1521-1,5,6호  
나. 대지면적 : 2,432.97㎡  
다. 건축면적 : 771.80㎡  
라. 건축연면적 : 9,248.92㎡  
마. 건설규모 : 지하2층, 지상10층, 아파트1동, 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5. 사업시행기간 : 2004. 8~2005.10(예정)  
※ 따로붙임 : 설계도서(생략)

**◎서초구고시 제2004-45호**

**하천점용허가**

1.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02-570-6400 서초구청 건설관리과)

2004년 6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1. 하천명 : 양재천, 염곡천
2. 허가년월일 : 2004. 6. 21.
3. 위치 : 서초구 양재동 261-23외 2필지 (양재동 261-23, 99-5, 228)

- 4. 점용면적 :  
일시점용(150.2㎡) 영구점용(34.5㎡)
- 5.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 6. 점용기간 : 2004. 6.21 ~ 2004.12.30.
- 7. 승인받으자 :  
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 : 김신배)

**◎강남구고시 제2004-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14번지상 민영주택아파트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 1. 사업계획승인 내역
  - 가. 사업명 : 강남구 삼성동 100-14호 민영주택사업
  - 나. 사업주체 : 강남구 삼성동 100-14호 김기섭외 14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14호 강변빌라 B동-202호)  
동부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번지 수서 현대 벤처빌 1920호)
- 2. 사업시행의 위치, 면적, 규모
  - 가. 사업위치 :  
강남구 삼성동 100-14번지
  - 나. 대지면적 : 2,621.00㎡
  - 다.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 지하2층/지상13층, 36세대 및 부대시설
  - 라. 건축면적 : 639.75㎡
  - 바. 건축연면적 : 9,533.51㎡
- 3. 사업시행기간 : 2004. 7 ~ 2005. 9.
- 4.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 5.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보관

**◎강동구고시 제2004-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지형도면 정정승인**

-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77. 8.29)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9호('78. 1. 31)로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57호('78. 2.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천호동로타리 ~ 동부종합시장로타리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정정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획도로과 (☎ 480-1385~6), 지적과와 천호2, 4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강 동 구 청 장

-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지형도면정정승인
  - 구분 : 지정
  - 규모
    - 등급 : 중로
    - 류별 : 1류
    - 번호 : 163
    - 폭원 : 20m
  - 기능 : 보조간선도로
  - 연장 : 300m
  - 기점 : 천호동 로타리
  - 종점 : 동부종합 시장로타리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주요경과지 : 천호동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77. 8.29)

- 구분 : 변경
- 규모
  - 등급 : 중로
  - 류별 : 1류
  - 번호 : 163
  - 폭원 : 20m
- 기능 : 보조간선도로
- 연장 : 300m
- 기점 : 천호동 로타리
- 종점 : 동부종합 시장로타리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주요경과지 : 천호동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77. 8.29)

- 비고 : 도면 일부정정
- 나. 관련도서 : 강동구청 도시계획도로과,  
지적과, 천호2동사무소, 천호4동사무  
소 비치도면과 같음(도면생략).

**구 공 고**

**◎성동구공고 제2004-316호**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지정**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차 정밀검사지정사업자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성 동 구 청 장

- 1. 업체명 : (주)삼흥자동차서비스
- 2. 대표자 : 이상엽
- 3.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8-5
- 4. 지정번호 : 제 4 호
- 5. 검사 업무 범위 :  
비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6. 대표자전화번호 : 02-2246-8624
- 7. 지정일자 : 2004년 4월 16일

**◎도봉구공고 제2004-3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주차장, 사회 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4-42호 (2004. 6.21)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봉구 창동 505-2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케 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5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의 시행지 :  
도봉구 창동 505-21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공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 2) 사업의 명칭 :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 다. 사업의 면적 : 4,669㎡
-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사.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 2289-1396)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수용 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의의권리	
1	창동 502-4	1,507	83	도로	도로	도봉구					
2	창동 502-29	169	12	대지	주택	최병균	도봉구 창동 502-29				
3	창동 502-30	202	175	대지	주택	신성수	도봉구 창동 502-30	부부농협	쌍문동 619	근저당권	
						박현아	노원구 상계동 626 주공@1415-303				
4	창동 503-4	192	192	도로	도로	이수택	성북구 정릉동 192-274				
5	창동 503-7	102	23.83	대지	주택	신은숙	강남구 일원동 611-1 공무원@ 808-405				
			24.67			강현승	"				
			10.17			김형채	전북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 743-148 우아@108-108				
			34			강동현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 907-312				
			9.33			황중기	영등포구 신길동 186-324				
6	창동 503-8	94	22.66	대지	주택	배성관	경기 용인 포곡면 둔전리 147 신원2차@ 202-606				
			8.67			김희자	광진구 구의동 253-16				
			31.34			최인정	경기 과천 별양동 6 주공@ 501-207				
			22.66			안아영	관악구 남현동 602-73				
			8.67			이종기	경기 고양 덕양구 성사동 730 신원당마을 503-506				
7	창동 503-9	102	102	대지	주택	홍문기	송파구 문정동 62-5 문정현대@ 101-105				
8	창동 503-10	93	93	대지	주택	이희경	강서구 내발산동 678-6	부부농협	쌍문동 619	근저당권	
9	창동 503-11	132	132	대지	주택	이병근	송파구 마천동 202-5				
						박영우	영등포구 신길동 495				

연 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의의권리		
10	창동 503-13	112	10.62	대지	주택	양정숙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45 삼환@ 101-604					
			25.7			윤기암	등대문구 전농동 113-27					
			39.36			김미희	충남 천안 신방동 905 향촌현대@ 302-1902					
			10.5			조효환	강남구 수서동 747 수서삼성@ 103-1503					
			25.82			문기남	강남구 포이동 201, 3층					
11	창동 503-14	112	112	대지	주택	홍현중	성북구 정릉동 16-149, 201홍	도봉 새마을금고	방학동 661-18	근저당권		
						김낙규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 산2					
12	창동 503-15	2	2	도로	도로	이경진	노원구 월계동 911-9 2층 - 1호					
13	창동 503-16	2	2	도로	도로	전장수	창동 503-8					
14	창동 504-21	2,162	2,162	주차장	주차장	도봉구						
15	창동 504-23	132	132	대	주택	이문선	중랑구 신내동 618 동성@ 12-2205	신내동 새마을금고	신내동 456-3	근저당권		
16	창동 505-8	126	126	대	주택	이삼원	경기 시흥 은행동 243-1 산호@ 나-506					
17	창동 505-9	129	129	대지	주택	한영복	창동 505-9					
18	창동 505-10	145	145	대지	주택	서찬호	창동 505-10	북부농협	쌍문동 619	근저당권		
								임진숙	도봉구 창동 505-10	가압류		
19	창동 505-11	155	155	대지	주택	정홍교	노원구 창동 505-11					
20	창동 505-12	142	142	대지	주택	오세만	창동 505-12					
21	창동 505-13	122	122	대지	주택	이문선	중랑구 신내동 618 동성@ 12-2205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22	창동 505-15	155	155	도로	도로	염숙자	은평구 증산동 194-9 / B - 7					
23	창동 507-8	109	109	도로	도로	도봉구						
24	창동 507-9	20	20	도로	도로	도봉구						
25	창동 507-10	15	15	도로	도로	도봉구						
26	창동 508-2	44	44	도로	도로	도봉구						

수용 할 물건조사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m)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창동 502-30	계		108.32							
		1층	연외조	49.52	주택	신성수	도봉구 창동 502-30				
		2층	연외조	49.52	주택	박현아	노원구 상계동 626	부부 농협	도봉구 쌍문동 619	근저당권	
		3층	"	4.26	창고		주공@ 1415-303				
		지하	"	5.02	창고	신성수	도봉구 창동 502-30				
2	창동 503-7	계		171.27							
		1층	연외조	15.67	주택	황중기	영등포구 신길동 186-324				
		1층	"	41.42	"	강현승	강남구 일원동 611-1 공무원@804-1105				
		2층	"	57.09	"	강동현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907-312	한상준	도봉구 창동 503-7	주택 임차권	
		지하	철근콘크리트	17.07	"	김형채	전북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 743-148 우아@108-108				
		지하	"	40.02	"	신은숙	강남구 일원동 611-1 공무원@808-405				
3	창동 503-8	계		168.84							
		1층	연외조	15.58	주택	이종기	경기 고양 일산구 성사동 730신원당마을 503-506				
		1층	"	40.7	"	안이영	관악구 남현동 602-73				
		2층	"	56.28	"	최인정	경기 과천 별양동6 주공@501-207				
		지하	철근콘크리트	15.58	"	김희자	광진구 구의동 253-16				
		지하	"	40.7	"	배성관	경기 용인 포곡면 둔전리 147 신원2차@202-606				
4	창동 503-9	계		71.09							
		1층	연외조	56.68	주택	홍문기	송파구 문정동 62-5				
		지하	"	14.41			문정현대@101-105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편집 면적 (㎡.m)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5	창동 503-10	계		65.39							
		1층	연와조	53.29	주택	이희경	강서구 내발산동 678-6	북부 농협	쌍문동 619	근저 당권	
		지하	“	12.1							
6	창동 503-11	계		47.73							
		1층	연와조	39.37	주택	이병근	송파구 마천동 202-5				
		지하	연와조	8.36							
7	창동 503-13	계		174.57							
		1층	철근콘크리트	40.24	주택	문기남	강남구 포이동 201, 3층				
		1층	“	16.37	주택	조효환	강남구 수서동 747 수서삼성@103-1503				
		2층	“	61.35	“	김미희	충남 천안 신방동 905 향촌현대@302-1902				
		지하	“	40.05	“	윤기암	동대문구 전농동 113-27				
		지하	“	16.56	“	양정숙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5 삼환@ 101-604				
8	창동 503-14	계		74.81							
		1층	연와조	32.69	주택	홍현중	성북구 정릉동 16-149 201호	도봉 새마을금고	창동 503-14	근저 당권	
		1층	연와조	32.66	주택	김성철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320-1 장미연립 102-404				
		지하	연와조	4.73	주택	홍현중	성북구 정릉동 16-149 201호	도봉 새마을금고	창동 503-14	근저 당권	
		지하	연와조	4.73	주택	김성철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320-1 장미연립 102-404				
9	창동 504-21	계		81.98							
		1층	연와조	69.02	주택	도봉구					
		지하	“	12.96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m)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0	창동 504-23	계		79.14							
		1층	연외조	69.02	주택	이순애	동작구 노량진동 232-9 정호아트빌라 301호	신내동 새마을 금고	중랑구 신내동 456-3	근저 당권	
		1층	경량철골조	10.12	상가						
		지하	연외조	12.96	주택						
11	창동 505-8	계		80.43							
		1층	연외조	61.62	주택	이삼원	경기 시흥 은행동 243-1 산호@ 나-506				
		지하	연외조	18.81	주택						
12	창동 505-9	계		180.42							
		1층	철근콘크리트	25.2	주택	장정경	영등포 당산동2가 86				
		1층	철근콘크리트	33.9	주택	김도현	양천구 신월동 566-11				
		2층	철근콘크리트	62.22	주택	하노수	경기 수원 장안구 울전동 439-8 울전@506호	정동수	양천구 목동 926-8 목동성원@101-801	근저 당권	
		지하	철근콘크리트	25.2	주택	신세란	동대문구 답십리동 80 청솔우성@101-301				
		지하	철근콘크리트	33.9	주택	한서현	도봉구 창동 492-18				
13	창동 505-10	계		78.61							
		1층	연외조	65.32	주택	서찬호	도봉구 창동 505-10	북부농협	도봉구 쌍문동 619	근저 당권	
		지하	“	13.29				입진숙	도봉구 창동 505-10	가압류	
14	창동 505-11	계		88.06							
		1층	연외조	73.22	주택	정홍교	도봉구 창동 505-11				
		지하	연외조	14.84	주택						
15	창동 505-12	계		95.11							
		1층	연외조	74.05	주택	오세만	도봉구 창동 505-12				
		지하	연외조	21.06	주택						
16	창동 505-13	계		79.77							
		1층	연외조	67.6	주택	심순기	성북구 성북동 173-18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 당권	
		지하	연외조	12.17	주택						

**◎서대문구공고 제2004-2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독립근린공원내이진아 기념도서관신축)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22호(2004. 5. 6)로 도시관리계획(독립근린공원)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 2004-46호(2004. 5.10)로 지형도면승인 고시된 “독립근린공원내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열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330-14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대문구청(문화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신축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독립근린공원

다. 건축면적 : 582㎡ (연면적 2,520㎡)

라. 사업내용 : 도서관 1동 신축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05. 12. 31.

바. 사업시행자

- 명칭 : 서대문구청장
- 주소 : 서대문구 연희로 165

(서대문구 연희3동 168-6)

사.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야.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용할 토지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서대문구현저동 101	공원	103,576	서울특별시	-	-	-	-	

**◎서초구공고 제2004-2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도로,광장)시행자 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0호(1995. 8.28)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도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제88조, 동법률시행령 제 96조·제9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코자 동법률 제9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초구 반포동 118-3번지 외 10필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도로,광장)  
반포천 북개주차장, 도로, 광장건설  
공사

다. 사업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연번	시설명	규 모		비 고		
1	주차장건설	33,838.7㎡ (연면적 83,165.52㎡)		변경없음		
2	도로확장(사평로)	B=40→50~65m, L=594m		"		
3	도로신설(관통도로)	B=8m, L=308m		"		
4	광장확장(광장105호)	1,398.0㎡		"		
5	광장확장(광장107호)	203.0㎡		"		
6	도로확장(반포로)	B=40→44m, L=210m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주)센트럴시티 대표이사 유종훈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주)센트럴시티 대표이사 김정윤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1995. 8.31 ~ 2004. 9.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	--	---	--	--

  

연번	시설명	위 치	면적(㎡)	무상양여자	귀속관청	비 고
1	주차장	서초구 반포동 118-3 일대	33,838.7(대지)	(주)센트럴시티	서울시	귀속대상 : 서울시토지를 제외한 주차장 시설물
			83,165.52(연면적)			
2	도 로 (사평로 확장)	서초구 반포동 118-12 일대	7,190.0 (B=40→50~65m L=594m)	(주)센트럴시티	서울시	
3	도 로(관통도로)	서초구 반포동 19-11 일대	2,080.2 (B=8m, L=308m)	(주)센트럴시티	서초구	
4	광 장(105호)	서초구 반포동 118-8 일대	1,398.0	(주)센트럴시티	서울시	
5	광 장(107호)	서초구 반포동 118-3 일대	203.0	(주)센트럴시티	서울시	
6	도 로(반포로 확장)	서초구 반포동 19-10 일대	883.7 (B=40→44m L=210m)	(주)센트럴시티	서울시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서초구 도시정비과(☎570-6385)

3.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단위 : m<sup>2</sup>)

구 분	동별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시설별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차장 (반포천 및 암거복개 및 도로구간)	사평로 (B=40→ 50~65m, L=594m)	관통도로 (B=8m, L=308m)	광장 (105호) (107호)		반포로 (B=40→44m, L=210m)	주소		성명
		계		48,658.7	45,593.6	33,838.7	7,190.0	2,080.2 <380.9>	1,398.0	203.0	883.7			
1	반포동	118-1	도로	3,961.1	1,409.7	1,385.0	-	<50.3>	-	-	24.7		서울특별시	지구외: 2,551.4
2	반포동	118-2	구거	7,409.9	7,409.9	7,241.0	-	<97.9>	168.9	-	-		서울특별시	
3	반포동	118-3	제방	11,823.4	11,757.0	11,212.0	-	<142.7>	374.0	171.0	-		서울특별시	지구외: 66.4m <sup>2</sup>
4	반포동	118-5	도로	348.6	348.6	161.0	-	-	187.6	-	-		서울특별시	
5	반포동	118-6	도로	3,683.0	3,629.0	3,629.0	-	<48.2>	-	-	-		서울특별시	지구외: 54.0m <sup>2</sup>
6	반포동	118-8	제방	1,111.5	989.8	72.1	389.0	-	528.7	-	-		서울특별시	지구외: 121.7m <sup>2</sup>
7	반포동	118-9	제방	10,512.9	10,450.1	9,282.6	1,135.5	<41.8>	-	32.0	-		서울특별시	지구외: 62.8m <sup>2</sup>
8	반포동	118-11	하천	830.6	642.7	-	503.9	-	138.8	-	-		서울특별시	지구외: 187.9m <sup>2</sup>
9	반포동	118-12	하천	6,038.5	6,017.6	856.0	5,161.6	-	-	-	-		서울특별시	지구외: 20.9m <sup>2</sup>
10	반포동	19-10	도로	859.0	859.0	-	-	-	-	-	859.0	반포동 19-3	(주)센트럴 시티	
11	반포동	19-11	도로	2,080.2	2,080.2	-	-	2,080.2	-	-	-	반포동 19-3	(주)센트럴 시티	

※ 1. ◇ 은 관통도로 중복결정면적임

◎서초구공고 제2004-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위한열람

- 1. 서초구 반포4동 612번지 일대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2004.05.29 제출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준하여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 2. 본 사업시행인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과 (☎02-570-6493)와 반포4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반포동 612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나.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612-74호외 19필지
- 구역의 면적 : 6,198.2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주)만울종합건설 대표 임 철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6-4호 세종빌딩 502호

라.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

마.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 지하2층, 지상 15층 연면적 24,958.75㎡ 아파트 2개동 63세대

- 기타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

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비치된 도서 참조

사. 공람 및 열람 장소 :

- 서초구청 건축과(☎02-570-6493)
- 반포4동 사무소(☎02-536-8321)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업소 고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4-1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허가 받은 자
  - 성명 : 삼협건설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강향희
  - 주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 허가점용(사용)개요
  - 하천명 및 위치 : (한강)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
  - 점용(사용) 면적 : 부산2척 480㎡ (수상파이프)
  - 점용목적 : 한강저수로 정비 점용
  - 점용기간 : 2004. 6.17. ~ 2004. 7.31.
- 허가연월일 : 2004. 6.18.

- 점용목적 : 기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뚜껑 교체 및 인상, 환기구 설치
- 승인기간 : 2004. 6. 22 ~ 2004. 6.25
- 허가받은자
  - 주소 : 마포구 당인동1
  - 성명 :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4-1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승인년월일: 2004. 6.22
- 위치: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외 4개소
- 지목 : 하천
- 점용면적 : 28㎡